

과점주주(100%)가 된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결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하께서 인용한 대법원 판례(2002두1144, 2004. 2. 27)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법인이 유상증자를 통해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 완전히 새로운 과점주주로 대체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과점주주 비율 100%중 74.98%만 취득하게 된 것으로 과점주주간의 내부거래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문과 같이 피상속인의 주식을 전부 상속받아 상속인이 새로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동일법인의 과점주주간 내부적 주식거래로 볼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세정-2299, 2005. 8. 25)

4. 골프장 코스 하자점검 및 흥별 난이도 측정실시에 따른 의제취득

[질 의]

골프장 코스 하자점검 및 흥별 난이도 측정검사를 위해 연습라운딩을 할 경우 골프장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여부

회 신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2조제2항에서 종과세율이 적용되는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의 경우 골프장코스 시설 완공일과 클럽하우스 완공일 간의 시간차가 발생함으로 인해 골프장코스를 점검하기 위하여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회원들을 초청하여 요금을 받지 않고 연습라운딩을 함으로써 단순히 골프장 점검을 하는 경우라면 코스 시설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과세권자가 확인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세정-25-17, 2005. 9. 7)